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 대통령령 제13,906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개정이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개정(1992.12.8, 법률 제4533호)으로 동법의 적용대상지역이 상임인구 30만 이상의 도시에서 10만 이상의 도시로 확대되고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절차가 보완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교통영향평가대상 및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충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새로이 도시교통정비지역에 포함되는 도시의 시장등은 2년이내에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장등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령 제3조제2항 단서 및 제4조의2).
- 나.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대상에 교통유발요인이 높은 대규모 연립주택 및 운동시설을 새로이 추가하고,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은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에 평가 및 심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

- 업의 범위를 현행심의대상규모의 최저 20퍼센트이하인 사업에서 30퍼센트이하인 사업으로 완화함(령 제9조제1항, 별표1).
- 다.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심의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신청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심의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허가등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교통여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등에는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재심의를 받도록 함(령 제9조의2).
- 라.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을 상임인구 30만 이상의 도시로 하고, 상임인구 10만 이상 30만미만의 도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함(령 제9조의6).
- 마. 교통유발부담금의 비부과대상에 공장 및 축사등 농업관련시설을 새로이 추가함(령 제9조의7).
- 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인 단위부담금을 현행 3.3제곱미터당 1천원에서 1제곱미터당 350원으로 조정함(령 제9조의8).

(법제처 제공)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이”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상주인구의 기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주인구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직할시장 또는 시장”을 “도시교통정비지역인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의 장”으로, “법 제4조제1항”을 “법 제5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당해 지역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포함된 후 2년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중 “법 제4조제7항”을 “법 제5조제7항”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기본계획의 수립·보고) ①시장등은 기본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주인구 30만 이상인 도시의 시장등은 교통부장관에게, 상주인구 10만 이상 30만미만인 도시의 시장은 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등은 입안한 기본계획을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할 때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본문중 “법 제6조제2항”을 “법 제7조제2항”으로,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이”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법 제7조제1항”을 “법 제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3항중 “법 제7조제2항”을 “법 제8조제2항”으로, “3월말일”을 “9월말일”로, “6월말일”을 “11월말일”로, “교통부장관”을 “상주인구 30만 이상인 도시의 시장등은 교통부장관에게, 상주인구 10만 이상 30만미만인 도시의 시장은 도지사”로 한다.

제7조중 “법 제8조”를 “법 제9조”로, “교통부장관”을 “상주인구 30만 이상인 도시의 시장등은 교통부장관에게, 상주인구 10만 이상 30만미만인 도시의 시장은 도지사”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시장등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의 운영개선”을 “서울특별시·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의 개선”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5호중 “대중교통의 운영개선”을 “도시교통의 개선”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개선명령의 협의)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이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경우 당해 명령의 내용이 교통권역과 관련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직할시장은 그 교통권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시장은 그 교통권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조의2 내지 제9조의13을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14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의 대상)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의 대상이 되는 일정규모이상의 사업 또는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등은 당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시설의 규모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의2(심의필증의 제출기한 및 재심의) ①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인가 또는 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심의필증을 교부받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 또는 시설의 계획과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받은 후 심의필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1. 심의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허가등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3년이내에 허가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
2. 심의필증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심의필증을 교부받은 후 사업 또는 시설계획의 변경 또는 주변 교통여건의 변동으로 심의필증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 또는 시설계획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서울

특별시·직할시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이후의 절차는 법 제14조 제2항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의3(사업 또는 시설계획의 조정·보완의 범위)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또는 시설계획을 조정·보완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시설계획의 변경
2. 교통유발량 감축을 위한 사업 또는 시설규모의 조정
3. 기타 사업 또는 시설계획의 조정·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9조의4(사후관리)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사업 또는 시설계획이 교통영향평가서 및 심의필증의 내용에 맞게 시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 교통부장관이 확인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시설계획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또는 시설과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또는 시설(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이거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2. 시·도지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시설계획 : 당해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또는 시설(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이거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9조의5(재평가의 사유등) ①법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통영향평가당시 예측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1. 인근 도로에서의 자동차 평균주행속도가 교통영향평가당시의 예측보다 30퍼센트이상 감소한 경우.
2. 인근 교차로에서의 자동차 평균지체시간이 교통영향평가 당시의 예측보다 50퍼센트 이상 증가된 이유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평가의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③재평가는 시·도지사가 직접 행하거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교통영향평가기관이 행한다.

④시·도지사는 재평가의 결과에 따라 당해 사업 또는 시설의 소유자에게 교통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지하고, 당해 사업 또는 시설 주변의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재평가의 내용등 재평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건설부장관 및 교통

부장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6(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상주인구 10만이상의 도시에 있는 시설물로 한다. 다만, 상주인구 10만이상 30만미만인 도시는 당해 시장이 도시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대상의 규모는 당해 시설물의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제9조의7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1천 제곱미터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③제1항에서 "시설물"이라 함은 점포·사무실·공장·수상건물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과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을 말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등은 당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결대지 위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2동이상의 시설물은 이를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

⑥제5항의 경우 "연접대지"라 함은 지번이 동일하거나 지번이 상이하더라도 대지경계선이 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그 폭이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9조의7(부담금의 비부과대상) ①제9조의6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8호의 시설물을 유상임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 및 외국인조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2. 주거용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 주차장
4.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시설물
5.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6. 종교시설
7. 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종 학교의 교육용 시설물
8.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9. 박물관법에 의한 박물관 및 준박물관시설
10.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및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의한 지방문화사업자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11.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보훈병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대학교의 대학병원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12.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등을 포함한다) 및 동표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관련시설

②제1항 각호의 시설물을 당해 시설물의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8(부담금의 부과기준) ①단일용도 시설물의 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담금=시설물의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②제1항의 산식중 단위부담금은 시설물의 각종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으로 하며,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2와 같다.

③복합용도 시설물의 부담금은 시설물의 용도별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계산한 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시설물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의 교통유발계수가 높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한다.

제9조의9(부담금의 부과대상자) 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현재 제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대상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동일한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담한다. 다만, 당해 시설물중 3제곱미터미만의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10(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및 납기) ①부담금의 부과기간은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년도 7월31일까지로 하고, 부과기준일은 매년 7월31일로 하며, 납기는 매년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로 한다.

②부과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9조의11(부담금의 징수방법등)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이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부과대상자에게 부담금의 금액·납기·납부장소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받은 납부무자는 부담금을 제9조의10의 규정에 의한 납기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부

담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 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시장등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기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이내로 한다.

⑤시장등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후, 과소 또는 과다 부과·징수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제9조의12(가산금)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체납부담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9조의13(대장의 기록·관리) 시장등은 부담금 부과·징수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14(부담금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 시장등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의11 및 제9조의1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장등"은 "구청장"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등은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서 부담금징수액의 100분의 10을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중 "법 제12조"를 "법 제23조"로 하고, 동조제3항제10호중 "내무부치안본부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호중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중심도시 및 교통권역"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법 제5조제1항"을 "법 제6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법 제9조"를 "법 제11조"로, "대중교통 운영개선"을 "도시교통개선"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법 제12조"를 "법 제23조"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서울특별시·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지방위원회가 설치된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교통·지역경제·도시계획·건설·도로담당국장 및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교통담당과장
2. 당해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시장·군수 및 경찰서장
3. 당해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 위치한 도로·철도·항만·공항관리청의 장
4. 위원장이 교통·도로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제19조제3호중 "대중교통의 운영개선"을 "도시교통의 개선"으로 한다.

제19조의2 제1항중 "법 제12조"를 "법 제23조"로,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위원장 1인"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교통부차관이 되고, 부

위원장은"을 삭제한다.

제20조제2항중 "법 제12조"를 "법 제23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지방위원회 부위원장"을 "당해 시·도의 교통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으로 한다.

제22조 본문중 "법 제15조"를 "법 제26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중 "법 제18조제2항제2호"를 "법 제29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29조 본문중 "법 제19조"를 "법 제30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32조중 "법 제22조제1항"을 "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 본문중 "법 제22조제2항"을 "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중 "법 제26조제2항"을 "법 제37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표중 사업란의 (5)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5호"를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6"로, 동란의(6)중 "산업기지가발촉진법 제2조제2항의 산업기지"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공업단지"로 동란의(8)중 "건축법 제8조의2"를 "건축법 제60조"로, 동란의(10)중 "항만법 제2조제1항"을 "항만법 제2조제2호"로, 동란의 (12)중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지하철도"를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도시철도"로, 동란의 (13)중 "항공법 제2조제4항의 비행장(군용비행장을 제외한다)"을 "항공법 제2조제4호의 비행장 및 제5호의 공항"으로 하고, 동란의 (16)본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4호"를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5호"로, 동란의 (16) (나)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란의 (18) 중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을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기타 관련법률"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의 (2)중 "20퍼센트"를 "30퍼센트"로, "5퍼센트"를 "20퍼센트이하"로 하고, 동목의 (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외된 범위안에서의 확장이 2회이상일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본문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기타

- (1)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교통영향 평가시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배치·건폐율·용적률·주차규모·동선체계등의 구체적인 건축계획(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의 경우는 용적률·주차규모·세대수·평균평형에 한한다)을 확정하여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교통영향 평가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 (2)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사업이 2이상의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

의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관련 시·도지사의 협의결과에 따라 심의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의 (1)의 건축물란중 "아파트"를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으로 하고, 동목의 (5)의 건축물란 (가)중 "관람장"을 "관람장(운동장면적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동목의 "(16)"을 "(17)"로 하고, 동목의 (17)의 건축물란중 "(1) 내지 (15)"를 "(1) 내지 (16)"으로 하며, 동목에 (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제2호 나목의 본문중 "(1) 내지 (16)"을 "(1) 내지 (17)"로 하고, 동목의 (1)중 " $1/20A_{20}$ "을 " $1/6A_{20}+1/20A_{21}$ "로, 동목의 (2)의 (가)중 " $1/2A_{20}$ "을 " $2A_{20}+1/2A_{21}$ "로 동 (나)중 " $1/3A_{20}$ "을 " $10/7A_{20}+1/3A_{21}$ "로, 동 (다)중 " $2/3A_{20}$ "을 " $2A_{20}+2/3A_{21}$ "로, 동 (라)중 " $1/2A_{20}$ "을 " $10/7A_{20}+1/2A_{21}$ "로 하고, 동목의 비교란 A_5 중 "관람장"을 "관람장(운동장면적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동목의 비교란 A_{20} 을 A_{21} 로 하고, 동목의 비교란에 A_{20}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_{20} : 복합용도의 건축물중 운동시설의 건축면적의 합계(m^2)

[별표 1] 제2호다목의 본문중 "용도변경"을 "용도변경(건축면적의 합계가 증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고, 동목의 (3)중 "(1) 및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 신축시에"를 "(1) 및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퍼센트"를 "30퍼센트"로, "5퍼센트"를 "20퍼센트 이하"로 하며, 동목의 (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외된 범위안에서 증축 또는 용도변경이 2회이상일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본문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기타

- (1)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에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시설물의 배치·건폐율·용적률·주차규모·동선체계등 구체적인 건축계획(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의 경우는 용적률·주차규모·세대수·평균평형에 한한다)을 확정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받은 내용대로 또는 제2호다목 (3) 본문의 기준범위안에서 당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 (2)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시설물이 2이상의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관련 시·도지사의 협의 결과에 따라 심의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한다.